

#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조성

코로나 피해 영세 가맹본부·점주 현장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이 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영세 가맹본부·점주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맹 분야 매출 급감이 현실화했고, 폐업 위기 속에서 본부-점주 간 분쟁 등 갈등 분출이 예상된다"면서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내용 및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 업무를 맡는다. 본부와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도 병행한다. 본부-점주 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갈등의 완충 창구 기능도 담당한다. 갈등이 외부화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 활성화를 돕는다.

공정위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보급해 본부-점주 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을 촉진한다. 피해 점주가 생기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도 지원한다. 본부나 본부 임원의 오너(소유주) 리스크 등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한다.

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 정책·법·제도를 교육하고, 시정 조치를 받은 본부를 대상으로 명령 이행 현황 확보 및 법 위반 재발 방지 교육을 함께 시행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시설·인력·교육 실적 등 지정 기준 증빙 서류, 업무 계획·인력·예산 등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장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결과 등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공정위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제31조의 2 제4항에 따라 수탁 기관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나중에 납부해도 기간인정·연금액수 ↑

(가입)

## 국민연금 돈보기

### 추후납부 제도

실직 등 소득없는 기간 납부 정지시 추후납부 가능, 전체 가입기간도 ↑

노후 준비위한 추후납부 신청자 증가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 가능

# 박진주(32)씨는 건강 악화로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건강을 회복한 후 1년 동안 이직 준비를 하며 얼마 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됐다. 그러다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하던 중 1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득 그 기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던 중 '추후납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주씨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낼 수 없었던 1년간의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추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진주씨의 사례 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 건강 악화,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추후납부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 ◆ 추후납부하면 받는 연금도 는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

실제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추후납부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



민연금의 '연도별 추납보험료 신청현황'에 따르면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7년 14만2567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12만3559명에 달했다.

이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추후납부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기간도 허용됐다.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는데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된 것. 이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날게 됐다.

#### ◆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

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국민연금이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35만6670원(A값, 2019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A값이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추후납부는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추후납부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무상교육 제외 高1, 2학기 등록금 두고 학부모들 분통

# “제대로 등교 한번 못 했는데 또 교육비 지출”

등교 여부 상관없이 등록금 납부해야  
학부모들 등록금 감면 요청 줄이어

“막내딸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난 2월 동복 교복값에 등록금, 육성회비까지 80만원을 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도 못 갔다. 5월 말까지 2분기 등록금에 하복값까지 또 80만원을 내라니...”(서울 고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지난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한 가운데, 최근 고1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2분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월 1분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코로나19 확산세로 등교하지 못했는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또다시 2분기 교육비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초·중·고교 학생 중 고1만 무상교육에서 제외돼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교 1학년생은 교육부의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는 전국이 동일하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만 고1 학생의 올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1인당 약 84만원 씩 감면한다.

고1 학생들의 2분기 등록금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 글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고교 1학년의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른다.

등록금 감면을 청원한 학부모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가지도 않

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리하니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생은 다르다”면서 “고등학교 전체를 무상 교육으로 추진하거나, 등록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올해 제외된 고1의 경우, 교육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이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휴업 기간에 자녀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신원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0-22호

###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신원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및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1)사 업 명 : 신원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 2)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원동 995번지 일대
  - 3)구역면적 : 5,022.5㎡
  - 4)기준세대 : 156세대(변경될 수 있음)
  - 5)건축규모 : 공동주택 196세대 및 부대시설시설, 신축연면적은 18,296.3㎡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여자자격
  -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심사)
  - 2) 입찰참여자자격 : 건축사업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 사유가 없는 자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3. 입찰일시 및 장소, 낙찰자 결정방법
  - 1)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15시(이후 도착시 입찰참가 불가)
    - 장 소 : 조합 사무실(양천구 신원동 992-4 소명플라자 303호)
    - 지 청 물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참석 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각 1부 첨부)
  - 2) 입찰참가등록
    - 제출기간 : 2020년 6월 1일(목요일) 10:00 ~ 15:00까지
    -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입찰참가서에 의함.
    - 제출장소 : 국가중앙정보전자조달(G2B) 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입찰가격)를 제출 후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원동 992-4 소명플라자 303호]로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류 제출(우편접수 불가)
  - 3)낙찰자 결정 방법
    -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7호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제2018-101호에 의거하여 설계자 적격심사로 선정
    - 적격심사에 따른 평가항목별 배점표는 국가중앙정보전자조달(G2B) 시스템 나라장터 첨부파일로 공고함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승낙없이 홍보물을 배포, 임대의원 및 조합원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함.
6. 기타사항
  - 1)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당 조합의 입찰방식 및 적격심사방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조합으로 귀속되며, 입찰마감 후 기재사항 변경 또는 서류 보완은 입찰 허용하지 않습니다.
  - 3)입찰일정 등은 조합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기타 문의전화 : 조합 사무실 (전화 (02) 2605-9951, 팩스(02) 2605-9952)

2020년 5월 13일  
신원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치호(직인생략)